

이사회 운영규정

2016. 2. 17. 제정

2021. 9. 1. 전면 개정

2022. 5. 13. 개정

Genexine

제 1 장 총 칙

제 1조 목적

본 규정은 주식회사 제넥신 이사회(이하 "이사회"라 한다)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적용범위

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 3조 권한

- ① 이사회는 제 13 조가 정하는 사항을 의결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.

제 4조 이사회내 위원회

- ①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-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
 1.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
 2.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 3.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
 4.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
- ③ 각 위원회의 구성, 권한,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

제 2 장 구 성

제 5조 구성

- ①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이사회 구성원은 3인 이상 7인 이내로 한다.
- ③ 이사회에는 총이사수의 4분의 1 이상의 사외이사를 둔다.

제 6조 의장

- ①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맡으며, 유고시에는 정관 제 39 조의 순서로 의장이 된다.
- ② 의장은 이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한다.

제 7조 감사의 출석

- ①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- ② 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8조 관계인의 의견청취

이사회는 의안을 심의함에 있어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안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 3 장 회 의

제 9조 종류

-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.
- ② 정기이사회는 분기별 1 회 개최한다.
-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제 10조 소집권자

- ①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의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 제 39 조에서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각 이사 또는 감사는 이사회 의장에게 의안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회 의장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이사회 의장이 이사의 소집청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거나, 감사의 소집청구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소집을 청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 11조 소집절차

-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 일 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문서,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써 통지하여 소집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 1 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할 수 있다.

제 12조 결의방법

- ① 이사회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(성립정족수)과 출석이사 과반수(의결정족수)로 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
- ④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이사회
의 성립정족수에는 포함되나, 의결정족수의 계산에서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
아니한다.

제 13조 부의 안건

- ① 이사회
의 부의안건은 결의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한다.
- ② 이사회
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.
- 1. 법령 및 정관상의 결의사항
 - (1)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, 공동대표의 결정
 - (2)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
 - (2)-2 준법통제기준의 제정·개정·폐지,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
 - (3) 지점의 설치·이전·폐지
 - (4)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, 운영, 폐지 및 위원의 선임·해임
 - (5) 이사회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
 - (6) 주주총회의 소집
 - (6)-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방법의 허용
 - (7) 영업보고서의 승인
 - (8) 재무제표의 사전 승인
 - (8)-2 재무제표의 최종 승인
 - (9) 이사회 소집권자의 특정
 - (10) 이사에 대한 겸업의 승인
 - (11)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의 승인
 - (11)-2 이사의 회사의 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
 - (12) 신주의 발행
 - (12)-2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
 - (13)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
 - (14) 전환사채,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
 - (15) 신주인수권의 양도 결정
 - (15)-2 자기주식의 취득 및 어분
 - (15)-3 자기주식의 소각
 - (16)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부여의 취소
 - (17) 중간배당의 결정
 - (17)-2 결산기 최종 배당 결정
 - (18)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
 - (19) 간이주식교환, 소규모 주식교환, 간이합병, 소규모 합병 및 간이분할합병, 소규모
분할합병
 - (19)-2 간이영업양도·양수·임대 등
 - (20) 일반공모증자의 결정

- (21)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정 및 대행업무의 범위 (정관 제 16 조)
 - (22)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의 설정 (정관 제 18 조)
 - (23) 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(정관 제 21 조)
 - (24) 교환사채의 발행 (정관 제 22 조)
 - (25) 상담역 및 고문의 선임 (정관 제 45 조)
2.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
- 가.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
 - (1) 정관 변경
 - (2)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 또는 양도
 - (3)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,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·변경 또는 해약
 - (4) 이사, 감사의 해임
 - (5) 자본금의 감소
 - (6) 회사의 해산, 회사의 계속
 - (7) 회사의 합병, 분할, 분할합병
 - (8) 사후설립
 - (9) 주식의 액면미달의 발행
 - (10)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
 - (11)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포괄적 이전의 승인
 - (12) 주식의 분할
 - 나. 보통결의 사항
 - (1) 이사, 감사의 선임
 - (2) 이사, 감사의 보수의 결정
 - (3) 재무제표의 승인
 - (3)-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경
 - (4) 현금·현물·주식배당의 결정
 - (4)-2 준비금의 감소
 - 다. 특수 결의
 - (1) 주식회사의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
 - 라.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사항
3. 기타 경영에 관한 주요사항
- (1) 경영목표 및 경영전략의 설정
 - (2)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
 - (2)-2 회사의 조직·부서편성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
 - (2)-3 공장, 사무소, 사업장 등 주요시설의 신설 및 개폐
 - (3) 경영의 감독 및 경영성과의 평가
 - (4) 경영진(등기이사)의 임면 및 보수의 배분
 - (4)-2 직원의 채용·인사·급여 및 복리후생 제도에 관한 사항

- (5) 5 억원 이상의 유형 또는 무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(2022.5.13.개정)
 - (5)-2 5 억원 이상의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 (2022.5.13.개정)
 - (6) 5 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증가에 관한 결정 (2022.5.13.개정)
 - (7) 5 억원 이상의 타 법인에 대한 출자 및 출자지분의 처분 (2022.5.13.개정)
 - (8) 5 억원 이상의 채무 면제, 인수 (2022.5.13.개정)
 - (9) 회계 및 재무보고 체제의 감독
 - (10) 법령 및 윤리규정 준수의 감독
 - (11) 기업지배관행의 유효성 감독
 - (12) 기업정보공시 및 내부통제의 감독
 - (13) 중요한 사규, 사칙의 제정 및 개폐
 - (14) 노조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
 - (14)-2 5 억원 이상인 소송의 제기 (2022.5.13.개정)
 - (15)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
 - (16) 기타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,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, 관계법령상 이사회 결의를 요하는 사항
- ③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- 1. 경영성과 및 경영에 관한 주요 집행사항
 - 2. 위원회가 위임을 받아 처리한 사항
 - 3. 제 15 조 제 1 항에 의하여 의사회에 보고를 요구한 사항
 - 4. 기타 법령 및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에 보고해야 할 사항

제 14조 권한의 위임

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해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로써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.

제 15조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독권

- ① 이사회는 이사의 청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 관련자료의 제출, 조사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② 제 1 항에 의하여 감독권을 행사한 이사회는 그 결과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 4 장 기 타

제 16조 의사록

-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여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- ③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.
- ④ 회사는 제 3 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.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.

제 17조 부속실 등

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 부속실을 운영하거나 전담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.

별첨 1. 특별공로금의 지급기준

부칙

본 규정은 2016 년 2 월 17 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본 규정은 2021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